

진 정 서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96. 10. 17	접수번호	10
진 정 인	주 소	문산읍 내포리	
	성 명	이득주의 93인	
처리일자	'96. 11. 8.		
처 리 결 과			
☐ 건 명 : 상습침수지역 방재대책 지원건 ☐ 진정요지 : 해마다 찾아오는 침수로 발생하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내포리 4개리 주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숙원인 “상습침수지역 내배수장 설치”, “문산천 제방안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준설하여 상습침수지역의 농경지 복토”등 2가지안을 제시하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망. ☐ 처리결과(회신내용) ○ 1996년 11월 17일 문산읍 내포리 이득주의 93인으로부터 문산읍 내포리 상습침수지역 수해방지대책을 위한 진정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코자 함. ○ 열악한 영농조건을 극복하며 미곡증산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신 진정인 등의 딱한 정상을 마음아프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간 뚜렷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을 시의회 의원일동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내포지구 농민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사안별로 검토해 보건데, 먼저, 1안으로 『상습침수지역 내배수장 설치』 제안에 대하여는 이권농경지구는 농지개량조합 물리구역으로서 농조에서 전반적인 수리여건을 검토하여 시설보강을 하여야 하나, 경지정리가 선행되어야 내배수장 설치시 원활한 배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파주시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소요예산 지원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토록 촉구하였으며, ○ 2안으로 제시하신 『문산천 하상준설』의 건은, 현재 정부에서는 문산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위하여 문제지역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정작업중에 있는바 관리청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회신된 향후계획에 의하면 직할하천 문산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진정한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하상준설이 가능(수해복구사업 차원의 정비사업 시행가능)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준설과정의 군사협의 문제와 준설후 농경지 복토에 따른 재반여건 검토등 수월치 않은 문제점이 있어 기대하시는 만큼 조속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계속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 내포지구 농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진 정 서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96. 10. 24	접수번호	11
진 정 인	주 소	광탄면 마장리 40-14	
	성 명	여중구	
처리일자	'96. 11. 8.		
처 리 결 과			
☐ 건 명 :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진상규명요망 ☐ 진정요지 : 광탄면 마장리 34-11번지 부지내 숙박업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파주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불허가처리 하였는바, 이는 현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없이 불허가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요망. ☐ 처리결과(회신내용) ○ 1996년 10월 24일 광탄면 마장리 40-14 여중구씨로부터 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한 진정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귀하께서 파주시에 민원을 접수하시어 불허가처분을 받으시고 처리과정과 불가사유에 대한 명쾌한 설명 또한 미흡하여 진정등 번거로운 수고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귀하의 진정내용을 살펴보건데, 먼저, 민원 불허처분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제심을 경료치 않은 일방적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4조의 2항 및 제5조에 의하면, 동심의위원회는 개별민원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이 시설허가 제한지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 심의를 하는 기구로서 동민원과는 직접관련이 없으므로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경료치 않았다는 주장은 조문해석의 착오로 사료됩니다. ○ 다음, 이 조례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제한지역에 지축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관계공무원의 임의 또는 확대해석에 따른 개연적			

불허처분이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조례상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능으로 다만, 의회는 행정권한 행사의
감시적기능, 견제적 기능은 있다할 것이나, 행정기관의 업무중 특히,
인·허가 업무는 행정책임자인 시장의 재량적 고유권한으로 적법타당성
여부는 판단키 어려운 범주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 다만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시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법 제17조 규정
에 의한 행정쟁송제기 심판청구(처분청의 직근상급관청)나 행정소송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행정쟁송제기(고등법원) 등에 의해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심판받은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파주시의회에서는 여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과 법령·조례등이 임의로
확대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애매모호한 조문정리등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귀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진 정 서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96. 11. 4	접수번호	13
진 정 인	주 소	파주시 금촌동 194	
	성 명	지 원 석외 85명	
처리일자	'96. 11. 8.		
처 리 결 과			
☐ 건 명 : 현대금촌타워 부도발생에 따른 해원개발(주)과 분양한 분양자 3제대책요망 ☐ 진정요지 : 해원개발(주)과 분양계약을 한 분양자와 해원개발(주)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해원개발(주)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것을 현대건설(주)로 명의변경을 해서는 아니되며 또 현대건설(주)가 해원개발(주)의 채권양도 양수에서 순수한 분양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파주시의회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용조사와 아울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망. ☐ 처리결과(회신내용) ○ 1996년 11월 4일 금촌동 194번지 지석원의 85인의 「금촌 현대타워 부도발생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코자 함. ○ 새로운 주거공간 마련과 사업의 타전을 마련하기 위한 일념으로 긴 세월 어려운 생활여건을 감내하며 용기를 잃지 않으셨던 여러분들께 금촌타워 부도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 시의회는 의당 여러분과 함께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야 하겠으나 사안자체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사상 쟁송내용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귀하등이 신청한 「건축주 명의변경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또 파주시에서도 「제3채무자」 지위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직·간접적 조정역할이 필요할 때 도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오니 진정인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